

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93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,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고자 혁신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기반을 마련하고 서울경제의 활력을 위해 중앙정부 및 민간과 공동으로 분야별 유망산업 펀드를 조성·운영하고자 함
- 나. 이에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기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펀드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,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출자근거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1항 제1호
 -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5항
 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- 나. 추진방향
- 공익성(기업성장 지원)과 수익성(적정 수익률)의 조화
 - 정부자금(모태펀드) 및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·효율적인 운용
 - 자금을 적시 공급하고 회수자금을 원활히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

다. 출자대상 :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

라. 출자의 필요성

- 4차 산업혁명시대, 스마트시티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서울의 미래 먹거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
- 창업실패자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기능이 취약하므로,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업·재도전을 촉진
-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펀드 투자로, 융자 및 단기성과 위주의 시장 기능 보완

출자분야	출자의 필요성
4 차 산 업 혁 명	-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·벤처·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여 서울시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
스 마 트 시 티	- 교통·환경·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 관련기업에 투자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도시문제 해결
창 업	- 원천기술 기반 첨단제조업 및 첨단 비즈니스 분야 창업기업에 투자하여 혁신창업 활성화
재 도 전	- 우수한 기술, 경험을 가지고 있고, 실패 후 재기도전 하는 창업자에 투자하여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
바 이 오	- 바이오 헬스케어, 생명공학 등 서울의 바이오산업 활성화
문 화 콘 텐 츠	- 전후방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우수 콘텐츠 보유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를 통한 산업 활성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1항 제1호

제62조의17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5항

제4조(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) ⑤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·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
2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3.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
4.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기금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과 산학협력팀장 홍승용 (☎2133-5232)